

학교체육위원회 운영 규정

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체육회 학교체육위원회 운영 규정

제정 2015. 01. 19.

개정 2022. 12. 13.

개정 2026. 01. 23.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체육회(이하‘장애인체육회’라 한다) 규약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·운영하는 각종위원회로 학교체육위원회(이하 ‘본 위원회’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2. 12. 13.>

제2조(기능)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학교체육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
2. 학생체육의 운영 및 지도·육성에 관한 사항
3. 특수학교(급)의 체육활동 및 현황에 관한 사항
4. 장애청소년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
5. 학생체육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
6.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
7. 장애청소년 장학금 대상자 심의에 관한 사항
8. 기타 학생체육진흥에 관한 사항

제3조(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장애인체육회 이사 또는 당해 분야 전문가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호선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.

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, 장애인체육회 관련사업 직원으로 한다.

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임기 및 해촉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단,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장애인체육회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.<개정 2026. 01. 23.>

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③ 장애인체육회 이사 중에서 위촉된 위원이 이사직을 사임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직도 자동으로 해촉된다.

제5조(회의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한다. 다만, 장애인체육회의

요청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이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 위원장은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② 본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의견청취)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애인체육회 관계직원 또는 해당부문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7조(수당) 회의에 참석한 각 위원과 초청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장애인체육회 임·직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.

제8조(사무처리)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장애인체육회 해당부서에서 담당한다.

제9조(긴급처리)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.

제10조(제척 및 회피) 위원은 본인,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제11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애인체육회 규약에 준한다.

부 칙(2015. 1. 19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 12. 13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6. 1. 23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